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·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 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

3. 주요내용

가.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(제6조의3제3항 신설)

- 1)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개정 후 소요예산 확보

다. 합 의 : 부처 의견조회 예정(6. 17. ~ 6. 27.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3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관 받은 동물 또는 식물 등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3(대통령선물의 관리) ①</p> <p>· 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의3(대통령선물의 관리) ①</p> <p>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</u> <u>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</u> <u>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</u> <u>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</u> <u>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</u> <u>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</u> <u>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</u> <u>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</u> <u>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</u> <u>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</u> <u>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11 - 2216